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병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60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4월 02일
발 의 자: 이병운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성준,
김영철, 김재진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송도호, 윤기섭,
이경숙, 이성배, 이원형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공공자전거 '따릉이'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 이용편의 증진과 여가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5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음.
- 이처럼 대규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, 관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했을 시 운영 주체인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함.
- 이에 현행 조례에 미비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따른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자전거 이용 중 불편이 발생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공공자전거 이용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함(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).
- 나. 보상제공이 가능한 범위를 규정함(안 제12조의3제4항제1~3호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공공자전거 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편이 발생한 경우,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자전거 이용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차체 결함, 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2.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노출되는 등 이용자에게 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초래한 경우
3. 그 밖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의3(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2조의3(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시장은 공공자전거 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편이 발생한 경우,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자전거 이용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차체 결함, 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</u> <u>2.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노출되는 등 이용자에게 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초래한 경우</u> <u>3. 그 밖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12조3 (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) 제4항제1호~제3호	△	[기술적 추계 곤란]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불편 발생 시 공공자전거 이용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나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 횟수, 피해 규모 및 보상 대상자 수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객관적인 비용 추계가 곤란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따른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안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에게 공공자전거 이용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게 되므로 서울시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, 차체 결함과 관련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고장신고 건수¹⁾는 자료가 있으나 제공할 보상의 구체적 기준(이용권의 종류(1일권, 정기권 등))이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액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며
 -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나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 횟수, 피해 규모 및 보상 대상자 수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객관적인 비용 추계가 곤란함

1) 서울시 공공자전거 고장신고 건수 (출처: 서울 열린데이터광장)

구분	'23년	'24년	'25년
고장신고 건수	172,913	161,846	112,879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경 명

☎ 02-2180-7955

e-mail : kimkmi080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